

예산총칙

제1조 :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	254,826,499	7,644,795
1.	일반회계	247,171,154	7,415,135
2.	특별회계	7,655,345	229,660
	의료보호기금	716,708	21,501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608,059	18,242
	주차장	4,543,775	136,313
	주거환경개선사업	172,640	5,179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11,700	18,351
	기반시설사업	116,697	3,501
	지하수관리	285,766	8,573
	재정비축진	600,000	18,000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8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79,03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